(보호자 분께)

인정 기준액을 초과해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다음 이유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인정 기준액을 초과하여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 결과 소득초과로 인해 필요서류를 제출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바랍니다.

	이 유	필 요 서 류 (사본 가능)
가	**실업 중이기 때문에 2024년의 소득으로는 참고가 되지 않음.** **(대상 실업 기간:2025년 1월 1일～2026년 3월 31일 사이의 연속 12개월간)** **※정년퇴직은 실업 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발생 상황에 따라 인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 (수급시간이 2025년 1월 1일~2026년 3월 31일 또는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 **※고용보험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개인 사업의 개업・폐업 등 신고서(신고의 신고의 구분이 구분이 폐업인 폐업인 것)
나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이기 때문에 2024년 소득으로는 참고가 되지 않음.** **(대상휴직기간:2025년 1월 1일～2026년 3월 31일 사이의 연속 12개월간)** ※ 이유 발생 상황에 따라 인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2가지 서류** (휴직기간이 2025년 1월 1일~2026년 3월 31일 또는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 **(1)** 근무처가 발행한 **"휴직증명서"** 등 ※휴직(예정) 기간이 기재된 것 **(2) 의사의 진단서** ※장기간에 걸쳐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신고의 구분이 폐업인 것
다	**(1) 2024년도의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확정신고를 하고, 그 의료비 공제액이 인정 기준 초과액과 동일액 또는 상회한다** **(대상 기간: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2)2025년 1월 1일～2026년 3월 31일까지 기간의 연속된 12개월의 의료비 합계가 10만엔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이 인정 기준 초과액과 동일액 또는 상회한다** **(대상 기간:2025년 1월 1일~2026년 3월 31일)**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만을 고려합니다. ※이유 발생 상황에 따라 인정일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 기재 (1)과 (2)는 각각 제출할 수 있으나 채용되는 것은 더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된 한쪽뿐입니다.	**(1)에 해당되는 경우** **확정 신고의 결과가 반영된 과세액(비과세) 증명서** ※2024년에 소요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직접 의료비 공제 절차를 진행하시고, 의료비 공제가 반영된 과세액(비과세) 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2024년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 의료비 공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 시점에서 가와사키시에 주민 등록을 한 분은 과세액(비과세) 증명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2)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 기간의 의료비 액수를 알 수 있는 서류 사본(건강보험조합 등에서 송부한 의료비 등의 안내문 또는 의료비 영수증 등)** ※입원 급부금과 출산 일시금 등의 보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심사에 사용한 필요 서류는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이후 의료비 공제 확정신고 등의 예정이 있는 분은 반드시 복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라	**시정촌민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을 받았다.** ※토지, 건물이나 주식 등 자산 매각과 양도에 따른 손실 계상에 의한 경우와 주택취득공제는 제외합니다. ※세대 전원이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다음 서류 중 하나** ※ 라부터 아에 대해서는 최신 연도(2025년도의 것)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비과세 증명서** **・면제 증명서** **・과세액 증명서**(감면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
마	**개인사업세 감면 적용을 받았다.** ※적용 이유는 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개인사업세 감면을 받은 내용의 통지서** (감면사유가 기재된 것)
바	**고정자산세 감면 적용을 받았다.** ※적용 이유가 천재지변(지진재해, 풍수해 등) 및 인위적 재해(화재 등)인 경우만	**고정자산과세대장 기재사항 증명서** (감면 사유가 기재된 것)
사	**(1)국민연금 보험료의 감면 적용을 받았다.** **(2)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감면 또는 징수유예의 적용을 받았다.** ※세대 전원이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경감**은**대상 외**입니다.	**(1)국민연금보험료 감면의 경우** **(다음 서류 중 하나)※대상 면제 기간:2025년 7월~2026년 6월** **・국민연금보험료 면제 납부유예 신청 승인 통지서** **・국민연금보험료 면제 사유 해당 통지서** **(2) 국민연금보험료 감면 및 징수유예의 경우** **(다음 서류 중 하나)**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승인 결정 통지서** **・국민건강보험료 징수유예 승인 결정 통지서**
아	**생활복지자금 대출을 받았다.** **(대출기간 또는 결정일:2025년 1월 1일~2026년 3월 31일)**	**생활복지자금 대출 결정 통지서(긴급소액자금 포함)**
자	**직업안정소 등록 일용직 근로자이다.** ※세대에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복수 있는 경우에는 수입이 있는 사람 전원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수첩**
차	**정시제 고등학교의 4학년생 등 2025년 4월 2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고등학생이 세대원 중에 있다.** ※고등학교 등 취학비를 기준액에 추가함으로써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학증명서**(대상이 되는 고교생이 재학하는 고등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 **또는 학생증 등**

2025 년 중의 대폭적인 대폭적인 대폭적인 소득 감소가 감소가 있는 등, 그 외 특별한 사유가 사유가 있는 분, 또는 필요서류를 필요서류를 잘 모르는 모르는 분은 학사과로 학사과로 학사과로 문의해 문의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